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713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713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1316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은, 최종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김준형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13163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가압류 신청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9,610,418원 및 그 중 89,589,428원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10,020,990원에 대하여 2024. 7. 24.부터 각 2024. 10.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890,662원 및 그중 4,383,554원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89,589,428원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각 2022. 12. 30.까지 연 6%, 그중 206,917,680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4. 21.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2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3.부터 2024.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118,574,248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를 추가, 확장, 감축하였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6,1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 표 중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보증채무자로부터"를 "보증채권자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보증계약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보증계약에 따라 ① 2022. 4. 20.경 D상가관리단에게 하자보수보증금 89,589,428원, ② 2023. 1. 16.경 E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보증금 206,917,680원, ③ 2024. 7. 23. D상가관리단에게 소송비용액 10,020,99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각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20. 9. 29.경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비용으로 4,383,55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위 가압류 신청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11조 제1, 2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D상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기간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한도액 중 61,653,486원(= 한도액 73,467,570원 -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10년차 하자보수비 11,814,084원)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보증계약에 따라 E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기간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한도액 중 56,920,762원(= 한도액 87,385,644원 -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10년차 하자보수비 30,464,882원)을 각 사전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보증책임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4. 2. 19.부터 2015. 6. 23.까지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모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의 책임이 대표이사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23. 1. 16.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20.경부터 2022.경 사이에 약 27,000,000원, 2023. 4. 10.경 294,966,750원, 2023. 3. 30.경 766,9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외 회사의 주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가압류 신청비용 4,383,554원 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9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2020. 9. 2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비용으로 4,383,554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압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7조 제6항을 근거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청구내용이 집행비용인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책임 부담 여부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약정에서 정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증책임을 대표이사 재직기간 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그 임직원이 회사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그 사람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36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8, 14,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중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1) 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원고와 거래한 보증의 보증기한까지 거래한도액 35,227,000,000원(보증), 1,608,000,000원(융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와의 업무거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제15조 제1항),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한도거래약정의 약정기간이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무렵인 2012. 3. 23.경, 2012. 8. 30.경, 2014. 2. 27.경, 2015. 7. 3.경 한도거래약정을 각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원고와 거래할 때마다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H, I, 피고, J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

③ 위 ②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보증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원고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자격으로 위 보증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이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보증한도액이 35,000,000,000원이 넘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3조에서 약정의 유효기간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 약정인 주식회사 C이 원고와 거래한 보증의 보증기간 또는 융자금(어음할인 포함)의 상환기일까지로 하고, 보증기한 또는 상환기일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의무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약정인인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주채무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시마다 당시 재직하던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3678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인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이 반드시 소외 회사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기간과 일치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이 보증금액 35,227,000,000원 등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 한도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주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하였다 할 것인데, 근보증은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때에 비로소 피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재직 중 생긴 채무'의 범위

피고의 보증책임을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중 기간에 생긴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각 구상금 채권이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중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가 여전히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D상가관리단과 E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한 때나 위 보증채권자들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재직 중 생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피고의 재직 기간 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하자보수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자(채무자)가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제1조).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는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한편,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상환이자와 부대채무를 지체 없이 조합에 변제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11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외 회사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13조에서 보증금 지급 이전에도 담보권실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약정기간은 2년인데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최장 10년에 이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하자보수비가 확정되어야 하는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지급이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지급'이 있어야만 '피고의 재직 중 생긴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원고의 하자보수 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야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상가관리단과 E 입주자대표회의의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근거도 없다.

③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에 관하여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 등 비용을 반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주채무가 위 한도거래약정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하자보수보증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재직 기간 중 생긴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구체적인 책임 범위

1) 하자보수금 관련 사후구상금 청구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가 2014. 1. 6.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D상가관리단이 2015. 4.경 이전부터 시공사인 소외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D상가단은 2016. 12. 30.경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22. 4. 20.경 D상가단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원리금 89,589,428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6. 24.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고 2015. 10. 8.경부터 소외 회사 등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요청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4. 2. 19.부터 2015. 6. 2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경우, D상가관리단이 피고의 재직 중에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재직 중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D상가관리단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소외 회사의 89,589,428원 상당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5. 6. 24.

사용승인을 받아 그 이후인 2015. 10. 8.경부터 하자보수의 이행청구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직기간 중 보증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비용 관련 청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7조 제6항에 "약정인은 원고가 기지급한 소송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와 조합이 약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배상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소외 회사가 D상가관리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상가관리단이 소외 회사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5809호), 그 소송의 결과 하자보수금이 원리금 포함하여 89,589,428원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2022. 4. 20. D상가관리단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 이에 D상가관리단이 소외 회사와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합100981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10,020,990원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법원 결정에 따라 D상가관리단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상가관리단에 소송비용 10,020,990원을 지급한 것 또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때에 발생한 보증사고, 즉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보증채권자인 D상가관리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비용 10,020,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전구상금 청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하며, 다만 목적 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참조).

갑 제1, 3 내지 8, 10, 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정인인 소외

회사가 2023. 4. 14. 및 같은 해 7. 14.경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각 보증채권자들로부터 하자보증금의 청구를 받고 각 보증금의 지급을 완료한 후 소외 회사에 그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배상청구서를 보냈으나 소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11조에 의하면, '약정인이 주무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보증채권자로부터 각종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정인의 융자금이 연체되거나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약정인의 융자금 이자가 연속 3회 이상 연체된 때', '약정인이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한도거래약정 규정 및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후구상권과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 재직 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소외 회사의 사전구상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전구상권 행사 요건이 피고의 재직기간 중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전구상권 행사 요건이 피고의 재직기간 중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전구상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6. 23.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D상가관리단에게 지급한 하자보수 원리금 89,589,428원과 소송비용 10,020,990원의 합계 99,610,418원 및 그 중 89,589,428원에 대하여 원고가 D상가관리단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22. 4. 21.부터, 10,020,990원에 대하여 원고가 D상가관리단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24. 7.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3호증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금액을 정리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여 그 변제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압류 신청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희영

판사임상민

판사박진웅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가 2023. 1. 16.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23. 1. 16.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